

의안번호	2218100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6. 4. 22.
추계번호	26F19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면제하고, 별정부동산 지정·승계 신청인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1.35억 원(연평균 0.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28년

(단위: 백만원)

	세목	2027	2028	누적	연평균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 (안 제72조)	취득세	-13.2	-13.2	-26.4	-13.2
	지역자원시설세	-21.6	-21.4	-43.0	-21.5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33.1	-32.7	-65.8	-32.9
	합계	-67.9	-67.3	-135.2	-67.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취득세 경감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인도 포함 - 별정우체국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세율 2%p 경감 ※지정·승계받지 못한 경우 경감액 추정 - 경감대상 (현행) 피지정인·승계인 → (개정안) 피지정인·승계인 및 지정·승계 신청인 - 적용기한: 2028.12.31. ○ 별정우체국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신설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확대 (현행) 연면적에 대한 세율¹⁾만 면제 → (개정안) 연면적에 대한 세율과 기본세율 면제 - 적용기한: 2028.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사업소 연면적 1m²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연면적 1m²당 500원)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부칙에 따라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별정우체국 수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 추세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별정우체국 수의 감소 추세는 우체국 수의 감소 추세를 상회함
 - 별정우체국 2019~2024년 연평균 증감률: -1.2%
 - 우체국 2019~2024년 연평균 증감률: -0.5%
-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개소 당 징수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별정우체국의 규모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해, 주민세 실적의 종업원분은 고려하지 않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 시 급여총액의 0.5% 부과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함²⁾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편익을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지

2)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표 2]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항	세목			현행	개정안
제72조 제1항	취득세			피지정인·승계인 2%p 감면	피지정인·승계인, 신청인 2%p 감면
제72조 제2항	재산세			면제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	면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	면제
		연면적에 대한 세율		면제	면제
		종업원분		면제	면제

주: 1. 음영은 현행 및 개정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2항 기준

- 2020~2024년 기간 동안, 별정우체국 수는 감소했으며, 그 감소 추세는 전체 우체국 수의 감소 추세를 상회함

[표 3] 별정우체국 연도별 현황

(단위: 국)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우체국	3,405	3,386	3,367	3,348	3,336
↳ 별정우체국	720	712	704	697	685

자료: 우정사업본부, 「우편통계」

- 2024년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약 2억원으로, 세목별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규정은 2019년 일몰 도래로 폐지됨

[표 4] 세목별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실적: 지방세 2018~2024

(단위: 건, 백만원)

조·항	세목	시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제72조 제1항	취득세	건수	24	29	29	12	16	29	10
		실적	14	35	23	32	34	12	18
제72조 제2항	지역자원시설세	건수	792	818	110	37	2	0	0
		실적	26	27	3	1	0	0	0
	주민세	건수	151	149	152	154	118	129	66
		실적	24	78	90	83	89	75	6
	재산세	건수	1,532	1,613	1,598	1,558	1,571	1,560	1,555
		실적	229	248	177	179	192	178	183
합계		건수	2,499	2,609	1,889	1,761	1,707	1,718	1,631
		실적	293	388	293	295	315	265	207

주: 음영은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규정의 일몰 이후 기간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2020~2024년 기간 동안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³⁾ 승인 건수 대비 취득세 경감 건수의 비율은 64% 수준임

- 2020~2024년 (지정·승계 승인) 150건, (취득세 경감) 96건
 - － 현행 기준 지정·승계 신청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 먼저 시설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지정·승계의 승인을 받고, 이후 시설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⁴⁾

[표 5] 별정우체국 승계 현황

(단위: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2025 평균
승계 신청	20	35	39	33	24	30	30.2
└ 승인	20	35	39	32	24	28	29.7
└ 미승인	0	0	0	1	0	2	0.5

주: 해당 기간, 별정우체국 승계가 아닌 지정의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없음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지정·승계 신청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정·승계 승인 건수 대비 취득세 경감 건수의 비율이 64%에서 100%가 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최근 5년 연평균 별정우체국 승계 건수(30.2건)와 취득 건당 평균 감면액(123.8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규정은 2019년 일몰 도래로 폐지되어 최근 실적이 부재하므로, 2018~2019년의 평균 건당 감면실적(3.27만원)에 별정우체국 수의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1.2%)을 결합하여 추계

3)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음

4) 별정우체국의 지정 또는 승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사시설 사용권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됨:

① (기존 건물의 사용 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②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을 제출해야 함

[표 6]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단위: 건, 천원, 천원/건)

	2018	2019	2018~2019 평균
건수 (건)	792	818	805
실적 (천원)	25,809	26,803	26,306
평균 감면실적 (천원/건)	32.6	32.8	32.7

주: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일몰(2019.12.31.)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면제) 추가로 면제되는 별정우체국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개인사업주의 기본세율(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 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1.2%)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표 7]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자본금액(출자금액)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일반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30억원 이하	5만원	5만원	250원/m ²	500원/m ²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주: 음영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면제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대상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면제하고, 별정부동산 지정·승계 신청인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1.35억 원(연평균 0.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28년

(단위: 백만원)

	세목	2027	2028	누적	연평균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 (안 제72조)	취득세	-13.2	-13.2	-26.4	-13.2
	지역자원시설세	-21.6	-21.4	-43.0	-21.5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33.1	-32.7	-65.8	-32.9
	합계	-67.9	-67.3	-135.2	-67.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